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5-82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7일
우정사업본부장

‘집중호우’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우체국금융 이용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특별재난 선포지역(36곳) 우체국금융고객

광역시·도	시·군·구	읍·면·동
광주	북구	광산구 어룡동·삼도동
경기도	포천시	-
충청남도	천안시, 공주시, 아산시, 당진시, 부여군, 청양군, 홍성군	서천군 판교면·비인면
충청북도	-	청주시 옥산면·오창읍
전라남도	나주시, 함평군	광양시 다압면, 구례군 간전면·토지면, 화순군 이서면, 영광군 군남면·염산면, 신안군 지도읍·임자면·자은면·흑산면
경상북도	청도군	-
경상남도	진주시, 의령군, 하동군, 함양군	밀양시 무안면, 거창군 남상면·신원면
세종	-	전동면

2.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- 가. 우체국예금 취급(타행계좌송금, 통장 재발행, ATM 현금인출) 수수료 면제
- 면제기간 : '25. 8. 7.(목) ~ '26. 2. 28.(토) [약 6개월]
 - ※ 인터넷·스마트뱅킹, ATM은 '25.8.8.(금) ~ '26.2.28.(토) 면제
 - ※ ATM은 선포지역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(타행카드·타행기기를 이용한 경우는 제외)
 - ※ 우체국계좌 보유고객에 한함

나.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/사고보험금 신속지급

- 접수기간 : '25. 8. 7.(목) ~ '25. 11. 28.(금)

- 유예기간 : '25. 8. 7.(목) ~ '26. 2. 28.(토) [약 6개월]

- 유예기간 경과 후 납입방법 : '26. 3월 ~ '26. 8월 중 분할 또는 일시 납입

3. 접수방법

가. 구비서류

- 우체국예금 고객

- 신분증(실명확인증표)

- * 타행계좌 송금, 통장 재발행 시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로 면제대상 확인

- 우체국보험 고객

- 보험료(환급금대출이자) 납입유예 신청서(우체국 비치)

- 신분증 및 시청, 읍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

나. 접수처 : 전국 우체국